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해외 지역회의 · 협의회

운영매뉴얼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준비합니다

희망의 새시대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여성들이 이루어가는 통일대박의 꿈
청년이 준비하는 통일
Preparation for the Korean Unification Led by the Youths

2015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Concurso de Perguntas e Respostas sobre Unificação da Península Coreana

조두부 통일 희망 OX 퀴즈

동·서독 통합정책에서 본 남북통일의 해법은?

한반도 평화통일, 중국의 협력 왜 필요한가

일본근기협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ew Approaches and Challenges
•13(Thu). Nov. 2014
•Washington, D.C

목 차

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1. 개황 11
2. 자문위원 17
3. 지역회의 20
4. 지역협의회 24
5. 지회 27

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개

1. 직무 31
2. 조직 32
3. 업무분장 33

03 제17기 자문위원 위촉 현황

1. 개황 및 특징 37
2. 해외자문위원 위촉 현황 38

04 제17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1. 제17기 활동방향 45
2. 제17기 해외 활동방향 51

05 해외협의회 운영매뉴얼

1. 운영비 55
2. 통일활동 사업비 58
3. 행사기획 · 준비 · 진행 61
4. 자문위원 애경사 지원 76
5. 홈페이지 활동실적 게재 77
6. 평화통일窓(창) 사용안내 84
7. 민주평통 웹진 • 민주평통 facebook ... 85
8. 『통일시대』(민주평통 기관지) 홍보 86

참고자료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89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95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103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106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111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114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126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1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 개 01

01 개 황

1. 설치근거

○ 설치근거 : 헌법 제92조

헌법 제92조 제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주요기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

○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 등의 기능 수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2] 제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이하 '민주평통' 또는 '통일자문회의'라 함.
2) 민주평통의 조직, 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으로 규정함. 이하 '민주평통법' 또는 '법'이라 함.

3. 주요연혁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헌법 제68조)
1981. 3.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1981. 4. 7	사무처 창설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2015. 7. 1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4. 구성 및 임기

○ 지역대표(지방의원), 직능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7천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법 제3조)

○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법 제11조)

* 제17기 임기 : 2015. 7. 1~2017. 6. 30

5. 조직체계

○ 의 장 : 대통령

-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법 제8조)

○ 수석부의장

-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

○ 부의장 : 25명

- 수석부의장, 시·도부의장(17명), 이북5도부의장, 해외부의장(5명), 여성부의장 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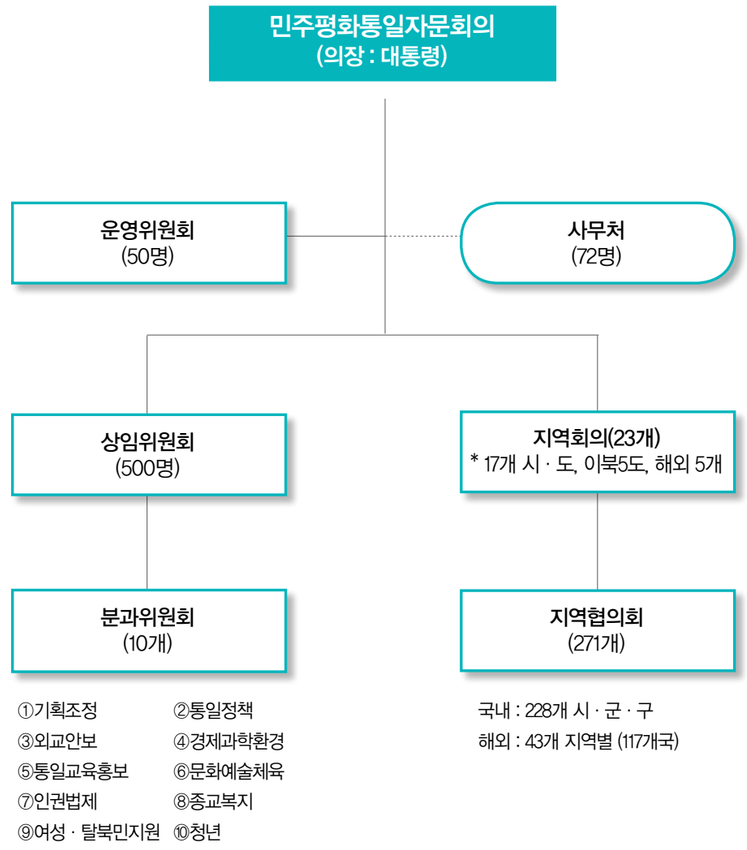

6. 기구별 기능

기 구	구 성	기 능
전체회의 **(법 제20조)**	전 자문위원 *해외위원은 현지 출범회의에 참석	• 범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운영위원회 **(법 제19조)**	50인 이내	•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사항 심의 • 자문위원 해촉 심사 • 기타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상임위원회 **(법 제18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 통일자문회의 위임사항 심의 • 의장이 명한 사항 심의 • 각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심의
분과위원회 **(법 제18조 제5항)**	10개 분과위원회	• 각 분야별 안건 심의 • 분과별 통일정책 연구 및 건의 ① 기획조정 ② 통일정책 ③ 외교안보 ④ 경제과학환경 ⑤ 통일교육홍보 ⑥ 문화예술체육 ⑦ 인권법제 ⑧ 종교복지 ⑨ 여성 · 탈북민지원 ⑩ 청년
지역회의 **(법 제29조)**	국내 : 17개 시 · 도별, 이북5도 해외 : 일본, 중국, 미주, 아세안, 유럽	•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수렴, 지지기반 확충, 국민합의 도출 •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추진
지역협의회 **(법 제29조)**	국내 : 228개 협의회 (시 · 군 · 구별) 해외 : 43개 협의회 (지역별)	

7. 상징물(MI)

○ 기본 모티브 : 무궁화, 태극, 비둘기

-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와 강건함, 순수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대한민국을 상징
- 태극을 품고 있는 비둘기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무한의지의 표현이자 안정과 화합을 의미
- 상징물의 주된 색상 중 '금색'은 순수함과 고귀함을, '남색'은 희망과 생명을 의미
- 금색과 남색의 조합은 민주 · 평화 · 통일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희망, 고귀한 의지를 표현

❖ 심벌마크

2색 조합형 심벌

- 금색(PANTONE 874C), 남색(PANTONE 2757)

단색형 심벌

- 금색(PANTONE 874C)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기

8. 홈페이지 www.nuac.go.kr

○ 주요 내용

- 국민마당, 알림마당, 지역회의 · 협의회, 정보자료마당, 민주평통 소개 등 정보 제공 및 참여 서비스
- 자문위원을 위한 평화통일창(통일교육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 이용 안내

- 모든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 게시판 글을 등록할 경우에는 [실명확인] 또는 [공공 아이핀]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글쓰기 가능

○ 민주평통 홈페이지

02 자문위원

1. 신분과 예우

○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국가와 민족 앞에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

- 자문위원은 임기 초, 다음의 내용을 선서 (법 제12조)

>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기타 이권행위 금지 (법 제14조)
  - 법률이 정한 벌칙을 위원에게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

○ 국민화합과 통일기반 조성활동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문위원은 정부 훈 · 포상과 의장 표창 수여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자문위원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 수여 및 자문위원증 · 자문위원 배지 배부

○ 자문위원이 법정회의에 참석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지급 (법 제13조)

○ 민주평통 사무처가 발행하는 기관지 『통일시대』를 비롯해 각종 통일문제 관련 자료 제공

2. 책 무

○ 전체회의, 지역회의 등 법정회의에 참석

○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다양한 통일활동 전개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과 공감대 형성 활동
-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정세에 관한 이해 확산 활동
- 자문건의를 위한 통일여론 수렴 활동
- 통일후계세대 육성 활동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 국민통합 활동

3. 자문위원 사 · 퇴직 및 해촉

○ 자문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 (법 제15조)

○ 자문위원이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는 당연 퇴직 (법 제16조)

○ 자문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민주평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법 제16조)

● 자문위원 실천강령 ●

우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우리는 통일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건의에 앞장선다.

1. 우리는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래통일세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에 앞장선다.

1.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통일 지지기반 강화에 앞장선다.

1. 우리는 국민대통합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선다.

03 지역회의

1. 설 치

○ 효율적인 통일활동 추진을 위해 국내 17개 시 · 도, 이북5도, 해외 5개 지역(일본, 중국, 아세안, 미주, 유럽)에 설치

○ 지역회의는 해당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임명한 부의장이 해당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

❖ 제17기 해외지역회의 설치현황

지역회의	소속 협의회
일 본	일본동부, 일본중부, 일본근기, 일본서부
중 국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선양
아세안	서남아, 동남아남부, 동남아북부,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중앙아시아
미 주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 샌디에고, 휴스턴, 달라스, 애틀랜타, 마이애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덴버,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밴쿠버, 브라질, 중미 · 카리브, 남미서부
유 럽	영국, 남유럽, 북유럽, 중동, 아프리카

2. 주요 기능과 사업

○ 기능(민주평통법 시행령 제25조의2)

-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여론수렴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의 확충
-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사업(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3조)

- 해외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통일정책 자문 · 건의를 위한 연구 및 조사
- 재외동포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수렴
- 청년 · 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활동
-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활동
- 기타 지역회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

3. 구성 및 역할

■ 부의장

○ 의장이 임명하며, 지역회의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

- 임기는 2년이며, 부의장 궐위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간 권한 및 업무를 조정

■ 지역회의 간사

○ 부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

- 부의장의 추천에 의해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

■ 지역운영위원회

○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며 지역회의 간사, 해당 지역회의 소속 협의회장으로 구성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당지역의 운영위원, 상임위원, 협의회 간사 중에서 추가로 선임 가능

※ 지역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

❖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 · 조정 · 통합
❖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
❖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분기별로 개최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가능

■ 지역분과위원회

○ 각 지역회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자문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임명

○ 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해당 지역협의회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해외 운영 · 상임위원

○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에 참여

- 특히, 재외동포 및 해외자문위원의 요구 · 여론 등을 수렴, 본국에 전달

○ 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주요 행사에 참석, 격려 · 지원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의 범위 ·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부의장과 협의

04 지역협의회

1. 설 치

○ 효율적인 통일활동 추진을 위해 국내 228개 시 · 군 · 구, 해외 43개 지역별로 설치 · 운영

- 지역협의회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임명한 협의회장이 해당지역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2. 주요 기능과 사업

○ 기능(민주평통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수렴 사업
- 통일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및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사업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사업
- 재외동포 화합과 거주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3. 구성 및 역할

■ 협의회장

○ 의장이 임명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

■ 부회장

○ 협의회장이 지명하되, 협의회 회의에서 인준

- 부회장은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장을 보좌
- 적정수의 부회장을 두며,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 1인을 임명

■ 간사

○ 협의회장이 추천하고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

- 협의회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

■ 분과위원장

○ 협의회장이 지명하되, 협의회 회의에서 인준

- 협의회에는 운영, 정치외교, 여성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 운영분과위원장은 협의회장이 겸임 가능

- 협의회의 분과위원은 위원의 개인별 경력 · 직책을 감안, 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이 협의 · 선임

다국가협의회의 운영

- 2개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지칭
  - 서남아, 동남아남부, 동남아북부, 호주, 중미카리브, 남미서부, 영국, 남유럽, 북유럽, 중동, 아프리카, 모스크바, 중앙아시아 등 13개 협의회
- 다국가 협의회장은 소속 자문위원들의 거주국, 생활권 등을 감안,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몇 개의 권역으로 분할하여 책임자(지회장, 분회장)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 과제 부여와 지원
- 전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회장 및 분회장 초청 회의 활성화
- 다국가 협의회장은 소속 지회 또는 분회의 자율적 활동에 가급적 자주 참석하고, 필요시 협의회 운영비 예산을 지원

05 지 회

1. 설 치

○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별 · 지역별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사무처장이 설치

2. 주요 기능과 사업

○ 협의회 활동방향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하되, 협의회장과 긴밀 협의

3. 구성 및 역할

■ 지회장

○ 지회장은 당해지역 자문위원 가운데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

-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활동방향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지회 활동 전개

■ 총무

○ 지회장이 임명하며, 총무는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 사무를 처리하고,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개 02

01 직 무

1. 설치근거

○ 민주평통법 제9조에 설치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

2. 기 능

○ 민주평통 운영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사무처장은 정무직(차관급)
- 사무처 직원은 국가공무원(정원 72명)

○ 관장사무(사무처 직제 제2조)

- ❖ 통일정책의 자문 · 건의 활동 지원
- ❖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 ❖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 · 연구
- ❖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 · 운영에 대한 지원

02 조 직

○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 (법 제9조)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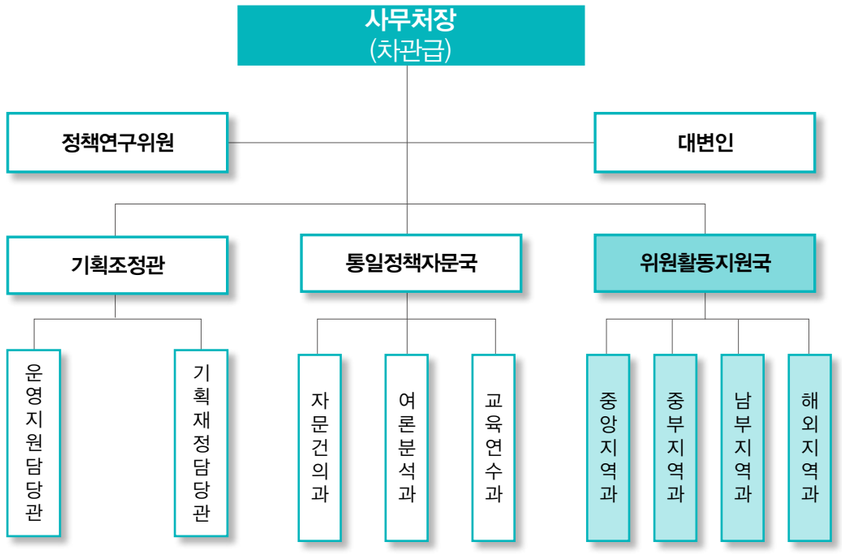

03 업무분장

부서명		주요업무	연락처
정책연구위원		• 통일정책 자문 · 건의를 위한 조사 · 연구	2250-2290
대 변 인		• 정책홍보, 언론대응 • 기관지(통일시대) 발간, 통일자료 지원	2250-2264
기획조정관	운영지원담당관	• 인사 · 교육 · 복무 및 결산 • 물품 · 국유재산 · 청사관리 및 기록물 관리 • 국내 지역회의 · 협의회 사무원 관리	2250-2211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기획, 예산, 조직, 법무, 국회, 정부 3.0 • 창의혁신, 성과관리, 감사 • 정보화 사업, 통합시스템 · 홈페이지 운영	2250-2226
통일정책자문국	자문건의과	• 통일정책 자문 · 건의 계획수립 · 추진 및 종합 • 국내 출범회의 준비 · 소집 및 의사진행 • 운영, 상임, 분과위원회 의사진행, 정책포럼	2250-2231
통일정책자문국	여론분석과	• 통일여론 수렴, 통일여론 조사 · 분석 • 통일관련 국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 직능별 정책회의, 평화통일포럼, 정기회의	2250-2291
통일정책자문국	교육연수과	• 자문위원 교육연수 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 자문위원 교육연수 교재 개발 · 보급 • 통일시대 시민교실	2250-2282
위원활동지원국	중앙지역과	• 서울 · 인천 · 경기 · 이북5도 지역회의 · 협의회 활동지원 • 국내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활동계획 수립 · 추진 • 자문위원 구성,	2250-2254
위원활동지원국	중부지역과	• 대구 · 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지역회의 · 협의회 활동지원 • 자문회의 훈 · 포상 등 • 여성위원 활동 계획수립 · 추진	2250-2249
위원활동지원국	남부지역과	• 부산 · 광주 · 울산 · 전북 · 전남 · 경남 · 제주지역회의 · 협의회 활동지원 • 청년위원 활동계획 수립 · 추진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기획 · 추진 •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2250-2233
위원활동지원국	해외지역과	• 해외 지역회의 · 협의회 활동 계획 수립 · 추진 • 해외 출범회의 및 지역회의 준비, 의사진행 • 해외 청년/여성 컨퍼런스 추진 • 해외 평화통일포럼, 대북정책강연회 추진	2250-2242 2250-2345~6 2250-2246~8

제17기 자문위원

위촉 현황 03

01 개황 및 특징

1. 개 황

구 분	16기(A)		17기(B)	증감(B△A)
전 체 위 원	19,937명		19,947명	10명
지 역 대 표	소계	3,085명	3,157명	72명
	광역	707명	695명	△12명
	기초	2,378명	2,462명	84명
직 능 대 표	13,577명		13,512명	△65명
재외동포대표	3,275명		3,278명	3명

※ 연임 : 50.7%(8,519명/16,790명), 국내 49.9%(6,746명), 해외 54.1%(1,773명)

2. 특 징

○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청년 위촉 확대

- 여 성 : 31.6%(5,301명/16,790명), 국내 32.9%, 해외 25.9%
- 30대이하 : 12.6%(2,123명/16,790명), 국내 13.8%, 해외 8.1%

○ '열린추천제'를 도입, 통일미래세대 육성

- 2030 청년위원 579명 위촉

○ 해외 통일 ·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해외지회 증설

- 7개 지회 신설(24개 지회 → 31개 지회)

02 해외자문위원 위촉 현황

1. 지역회의

연번	지역회의명 (소속 협의회수)	위원수	협의회
1	일 본(4)	403명	일본동부, 일본중부, 일본근기, 일본서부
2	중 국(5)	282명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선양
3	아세안(9)	589명	서남아, 동남아남부, 동남아북부,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중앙아시아
4	미 주(20)	1,641명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 샌디에고, 휴스턴, 달라스, 애틀랜타, 마이애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덴버,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밴쿠버, 브라질, 중미 · 카리브, 남미서부
5	유 럽(5)	363명	영국, 남유럽, 북유럽, 중동, 아프리카

2. 협의회

■ 협의회별 자문위원수

연번	협의회명(국가수)	위원수	국 가
	계	3,278	117개국(163공관)
1	일본동부	158	일본
2	일본중부	61	
3	일본근기	139	
4	일본서부	45	
5	베이징	75	중국
6	광저우	49	
7	칭다오	63	
8	상하이	52	
9	선 양	43	
10	서남아(9)	85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11	동남아남부(5)	68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2	동남아북부(3)	80	대만, 팔라우, 필리핀,(홍콩)
13	베트남	67	베트남
14	호주(3)	101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15	뉴질랜드	41	뉴질랜드
16	워싱턴	118	미 국
17	뉴 욕	171	
18	필라델피아	53	
19	보스턴	40	
20	로스앤젤레스	173	
21	오렌지 · 샌디에고	114	
22	휴스턴	56	
23	달라스	59	
24	애틀랜타	86	
25	마이애미	39	
26	하와이	57	
27	샌프란시스코	86	
28	덴 버	35	
29	시애틀	117	
30	시카고	119	

연번	협의회명(국가수)	위원수	국 가
31	토론토	89	캐나다
32	밴쿠버	66	
33	브라질	47	브라질
34	중미 · 카리브(14)	62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5	남미서부(6)	55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페루
36	영 국(2)	47	아일랜드, 영국
37	남유럽(7)	73	그리스,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38	북유럽(16)	107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39	중 동(15)	76	모로코, 바레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40	아프리카(21)	59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르완다,마다가스카르, 말라위,보츠와나,세네갈,스와질랜드,앙골라,에티오피아,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카메룬,케냐,코트디부아르,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토고
41	모스크바(3)	33	러시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42	블라디보스톡	42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이르쿠츠크)
43	중앙아시아(6)	72	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3. 지 회

연 번	지회명	소속 협의회명	비 고
1	텐진	베이징	* 17기 신설
2	다롄	선양	* 17기 신설
3	태국	서남아	
4	인도		
5	캄보디아		
6	말레이시아	동남아남부	
7	싱가포르		
8	대만	동남아북부	
9	홍콩		
10	하노이	베트남	
11	샌디에고	오렌지샌디에고	
12	라스베가스 · 피닉스		
13	하갓냐	하와이	
14	앵커리지	시애틀	
15	포틀랜드		
16	오타와	토론토	* 17기 신설
17	몬트리올		
18	과테말라	중미카리브	
19	파라과이	남미서부	
20	스페인	남유럽	
21	이탈리아		
22	베네룩스	북유럽	* 17기 신설
23	베를린		* 17기 신설
24	이집트	중동	
25	사우디아라비아		
26	아프리카동부	아프리카	* 17기 신설
27	아프리카서부		* 17기 신설
28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29	우크라이나		
30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1	키르키즈스탄		

제17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04

01 제17기 활동방향

1. 활동목표

활동목표 : 8천만이 함께 하는 행복한 남북통일

주요 추진방향

- 자문건의 내실화
- 통일준비 본격화
- 통일미래 인재 육성
-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 구현

구분	추진과제
자문건의 내실화	① 실천적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② 국민 통일여론 수렴 및 소통 활성화 ③ 자문건의 역량 강화
통일준비 본격화	④ 통일준비 구체화 ⑤ 통일준비 지방화 ⑥ 통일준비 국제화
통일미래 인재 육성	⑦ 청소년 통일의지 고취 ⑧ 청년 통일역량 강화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 구현	⑨ 국민통합의 선도적 역할 수행 ⑩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 확대 추진

2. 활동방향

1) 자문건의 내실화

■ 실천적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 통일준비 관련 정책건의 및 의제개발 기능 강화

-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요한 실천적 통일준비 과제를 자문 · 건의 의제로 개발
- 남북대화와 인도지원 및 북한인권 회복방안 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준비 정책 발굴 · 건의

○ 통일준비 정책건의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

- 분기별 정책건의 핵심 의제, 통준위 통일준비 과제 및 통일청사진 등에 대한 공론화 추진(국내 · 외 271개 지역조직 활용)
- 분과위원회 기획포럼(유관 기관 · 단체 · NGO 등 공동주최) 활용, 정책건의 의제에 대한 논의 심화 및 통일논의 거버넌스 구축

■ 국민 통일여론 수렴 및 소통 활성화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활성화

- 국민 생활현장의 풀뿌리 통일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정책대안 건의

○ '평화통일포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통일담론 주도

-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 심화 및 통일공감대 확산

○ 직능별 정책회의를 통한 분야별 통일준비 논의 선도

-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 (정책포럼) 남북관계 및 통일 · 안보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정책건의 실시
- (전문가 토론회)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개최로 통일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참여 통로 마련

■ 자문건의 역량 강화

○ 자문위원 정책건의 전문성 함양

-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일 · 대북정책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통일시대 시민교실 확대 및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공 등)

○ 통일준비 유관기관 간 협업관계 구축

- 통준위 – 통일부 등 유관기관 간 협업관계 강화, 업무분담 및 기능특화를 통해 통일준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 통준위 : 통일 어젠다 연구 · 심의, 통일 청사진 제시
  - ◇ 민주평통 : 국민여론에 기초한 통일 어젠다 제안, 홍보 및 피드백
  - ◇ 통일부 : 통일정책 수립 · 집행 및 조정

2) 통일준비 본격화

■ 통일준비 구체화

○ 통일 대비 법 · 제도 기반 확립

- 안정적 · 지속적 통일준비 기반 확립 및 통일상황에 따른 남북 법제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남북한 통합 법제 준비

○ 통일준비 재원 확보방안 마련

- 통일상황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남북경협, 북한개발 정책, 통일준비 재원 마련 방안 등 연구

○ 통일준비 인재 양성

-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국내 · 외 자문위원이 통일준비 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 연수 추진

■ 통일준비 지방화

○ 남북 시 · 도간 매칭(matching)을 통한 드레스덴 구상 실천

- 역사적 배경, 지역 유사성 등에 따른 남북 시 · 도간 매칭을 통해 통일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준비 · 추진

○ '작은 통일운동' 전개

- 모든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작은 통일운동' 추진

○ 지역회의를 지역사회 통일운동의 거점으로 육성

- 지역회의가 지역 통일운동 거버넌스의 주축으로서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전담

■ 통일준비 국제화

○ 해외 자문위원의 민간 외교사절 역할 확대

- 세계 11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자문위원들을 통한 민간 통일 · 공공외교 강화
- 특히, 미 · 중 · 일 · 러 등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국가 유력 인사들과 교류기반 확대 등 국제 통일네트워크 강화

○ 재외동포사회 화합 및 통일 ·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다양한 언어의 맞춤형 통일정책 자료 지원을 통해 차세대 동포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
- 해외 자문위원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 수행을 통한 재외동포사회 화합과 통일공감대 확산

○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등과 한반도 통일미래상에 대한 공론화 및 통일준비 정책 공동연구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경제개발 및 인권 개선방안 마련 등 국제 협력방안 모색

3) 통일미래 인재 육성

■ 청소년 통일의지 고취

○ 청소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 올바른 국가관과 긍정적 통일관을 갖도록 다양한 통일 공감활동 전개

- △통일골든벨 △탈북 청소년과의 대화 △북녘친구에게 편지쓰기 등

○ 스마트폰 등 보편화된 IT기기를 활용, 통일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인식 고취

■ 청년 통일역량 강화

○ 청년 자문위원의 참여의지와 활동력을 활용, 통일공감대 확산 및 탈북 청소년 정착 지원 강화

○ 통일미래 리더로서의 역할 제고를 통해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 발굴 · 모색

- △대학생 통일정책 대토론회 △글로벌 통일공공외교 대사 양성(반크 협업) 등

4)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像) 구현

■ 국민통합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국민생활 속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로 위촉

○ '봉사와 헌신', '참여와 희생'을 통해 지역 · 계층 · 세대 간 갈등해소 및 국민대통합에 선도적 역할 수행

-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 돌봄 △ 다문화가정 지원 등

■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 확대 추진

○ '하나' : 우리 국민과 민주평통, 그리고 탈북민이 '하나'가 되어 「통일대박」을 이루겠다는 공감대 속에,

○ '다섯' : ①탈북청소년 1:1 멘토링, ②법률자문지원, ③의료지원, ④장학지원, ⑤취업지원 등 '5대 중점사업' 전개

02 제17기 해외 활동방향

1. 활동목표

■ 통일 ·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 공감대 형성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우호여론 조성

■ 재외 동포사회 통일의지 제고 및 통일에너지 결집

2. 활동방향

■ 지역회의, 협의회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역회의 중심으로 협의회, 지회 단위별 활동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 권역별 공동사업 추진으로 통일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시너지 효과 유발

■ 해외 의견수렴 체계의 확립 및 특화사업 활성화

○ 협의회(지회 포함) 정기회의 체제 확립을 통한 의견수렴 기반구축

- 자체워크숍 등을 통한 활동과제를 공유하고, 자문위원간 연계체계 확보 · 유지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자체 워크숍(연 1회)

○ 협의회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

■ 대북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 제고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정부정책에 대한 현지 사회(주류사회 및 교민)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한반도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우호여론 조성
- 한반도 전문가 발굴 및 연계강화 활동 추진(전문가 초청 포럼, 세미나, 강연회 등)

■ 해외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 차세대(20~30대) 자문위원 및 중 · 고교생 대상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 · 추진

○ 국내차세대와 교류 및 연계사업 활성화로 동질감 부여

■ 재외동포사회의 소통 · 화합을 위한 활동 추진

○ 계층, 세대,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활동 전개

○ 한인회 등 동포단체와 공동행사 개최 (국경일 행사, 체육 · 문화행사 등)

❖ 지역협의회(지회) 통일활동 사업 유형

사업유형	주요내용(예시)
자문건의	정기회의, 임원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정책연구 등
위원역량 함양	자문위원 워크숍 등
통일논의 활성화	토론회, 세미나, 강연회, 설문조사 등
통일문화행사	걷기대회, 마라톤, 골프대회, 축구대회, 음악회 등
청소년통일교육	통일교실, 글짓기, 웅변대회, 사생대회, 통일 골든벨, 통일안보현장 체험 등
동포화합	지역사회 나눔 · 봉사활동 등

해외협의회 운영매뉴얼 05

01 운영비

1. 목 적

○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활동기반 조성

2. 관련 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급규정(참고자료 p.113 참조)

3. 기본 방침

○ 현지 물가 및 자문위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이전 분기 운영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다음 분기 지급이 가능

○ 국가보조금인 운영비 사용내역은 감사대상이므로 집행 · 관리가 투명해야 하며, 특히 사용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원칙 준수

○ 운영비의 회계 장부는 타 수입과 지출을 함께 기록하지 않고, 독립 장부를 마련 기록

- 통일활동사업비, 자문위원 회비 등은 별도 관리
- 운영비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출금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 명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은 소속 자문위원에게 공개

○ 협의회 회계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임기 종료후에는 인수 · 인계

4. 지급개요

○ 지 급 일 : 매 분기 첫째 달(1, 4, 7, 10월) 10일 전후

○ 지급방식 : 협의회 지정계좌 입금

○ 지급화폐 : 엔화, 유로화, US달러 등

5.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 공공요금제세 :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우편료, 제세공과금

○ 사무문화비 : 신문, 잡지, 도서구입비

○ 회의운영 보조경비 : 인쇄비, 회의용품비 등 회의운영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주 경비 개념이 아님)

○ 행사개최 보조경비 : 각종 행사개최에 사용되는 보조경비(주 경비 개념이 아님)

○ 사무실 유지비 :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사무용품대 등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6. 운영비 사용시 유의사항

○ 개인적으로 사용할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은 구입 불가

-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탁상용 PC, 노트북, 태블릿 PC, △프린터, 복사기 등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협의회 재산으로 관리하고, 후임 회장에게 인수 · 인계
- 스마트폰 구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통신비로 지출 불가

○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교통비, 식사비는 불가

- 소속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등 민주평통 업무를 위한 경우는 제외
- 이 경우 공식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다는 사실 증빙 필요(간담회 개최 시간, 장소, 참석자 성함을 명기)

○ 협의회 공식명의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수해의연금, 지역사회 협찬금은 불가

○ 개인명의의 애 · 경사 지출 불가

- 소속 자문위원의 애 · 경사에 협의회장 명의로 조화 · 화환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나 증빙 필요(애 · 경사가 있었던 자문위원 성명, 지출일자 등 명기)
- 다만, 축의금과 부의금은 불가

7. 정 산

○ 지출계산서와 지출부(영수증 포함)등 증빙서류를 유지 · 관리하고, 사무처에 반기별(상, 하반기)로 제출

-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1월, 7월) 사무처(해외지역과) 담당자 e-mail로 제출

02 통일활동 사업비

1. 목 적

○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가 추진하는 통일활동의 활성화 지원

2. 관련 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규정 (참고자료 p.116 참조)

3. 지원범위

○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 사업

○ 통일여론수렴 사업

○ 통일문화형성을 위한 체육문화 사업

○ 청소년 대상 통일후계세대 육성 사업 등

4. 지원 예산 항목 내용

○ 강사료, 간담 및 다과비, 현수막, 인쇄비, 임차료, 행사물품구입비 등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는 지출 불가
  - 사무실 유지비 등 운영비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 인건비, 자문위원 여비, 제세공과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불가

5. 지원절차

○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사업계획서, 통일활동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최소 10일 이전), 사무처에서 심의하여 지급

-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 절차 참조(p.60)

6. 결과보고 및 회계처리

○ 사업추진 지역회의 및 협의회는 사업완료 후 20일이내에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결과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사무처(해외지역과)에 제출

※ 제출기간 연장시 사무처(해외지역과)와 협의

○ 사업비지원금은 국가예산으로 감사기관의 감사대상이므로 지침에 맞게 집행

- 지원금에 대한 항목별 집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 첨부
  - 강사료 영수증(금액, 영수인 성명, 서명포함), 물품구입 및 제작, 간담비, 다과비 영수증 등

❖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 절차

절 차	업무내용
1 사업계획서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적, 추진일정, 주요내용, 소요예산 등 – 지원 신청액에 대한 객관적 산출내역 기재 –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신청서〈p.120〉 통일활동 사업 계획서〈p.121〉 ※ 협의회장 관인날인
2 사업비 지원 신청	○ 사업비 지원 신청 서류 사무처(해외지역과) 송부 – 사업실시 최소 10일 이전 신청(E-메일, FAX, 우편 등)
3 사업계획서 심의 및 지급 (사무처)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지원금액 결정(사무처) – 심의결과 협의회 통보(공문) – 협의회 및 지역회의 운영비 지급계좌로 송금
4 사업시행	○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해외지역과와 협의 ※ 사업비 지원 신청사업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5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사무처(해외지역과)에 결과보고서 제출 – 행사관련 사진, 회계증빙서류 첨부 – 지원금 집행 잔액이 발생시 사무처 반납 –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p.126〉 – 통일활동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p.127〉

03 행사기획 · 준비 · 진행

1. 행사 기획

○ 행사의 성격과 목적, 기대효과에 대해 충분히 파악

– △자문위원 위주의 내부행사인가, 동포 · 현지인 · 유관기관 인사를 초청하는 행사인가

– △홍보 · 교육 목적의 강연회인가, 의견수렴과 정책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인가 등을 구분

– 이에 따라 행사규모, 개최방식(공동주최 등), 초청대상, 홍보수단, 투입예산 등을 차별화

○ 기획단계에서 사무처와 사전협의 필요

– 사전협의 없이 상당부분 일이 진행된 상황에서 예산지원 요청 시, 검토과정에서 지원규모가 축소되거나 지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 특히 신문공고 등을 해야 할 경우 사전협의 필수

○ 소규모 자체행사를 여러번 하기보다는 가급적 동포사회와 현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바람직(연 1회를 하더라도 정례화시켜 브랜드사업화)

– 이 경우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

※ 1개 협의회 역량으로 부족할 경우 다수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추진

○ 자문위원은 물론 한인회 등 유관단체에 소속된 해외동포 참석 독려로 성과 극대화

2. 행사장 준비

○ 행사장은 행사장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곳으로 선정, 강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골프 클럽하우스 등 소란스러운 장소 지양
- 큰 공간을 파티션으로 나누어 사용할 경우, 같은 시간대 옆공간 예약상황 파악(마이크로 인한 소음, 방음수준 고려)
- 교회, 대학강당 등 강의내용 전달이 양호한 장소를 우선 고려

○ 행사장과 강사(사무처 추진단 포함) 숙소는 가급적 같은 곳으로 선정

- 주최측은 최소 2달전에 행사계획을 확정, 여유를 갖고 선정

  ※ 불가피하게 행사장과 강사 숙소가 다를 경우, 이동 경로 · 소요시간을 사전 파악(교통정체 가능성 등을 고려 여유있게 편성)

○ 행사장 확보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를 사전 파악

- △연단의 위치 및 규모, △(행사장 전면에) 현수막 설치 가능여부(규격 : 7M×0.9M 내외), △사용 가능한 마이크(무선마이크 포함) 개수, △스피커 등 음향시설, 녹음 가능여부 등 확인
- 동영상 상영이나 PPT 시연이 있을 경우 관련 장비 보유여부 확인(자체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임차)

○ 각종 행사물품은 체크리스트를 작성, 행사당일까지 지속 점검

- △태극기, 평통기, 평통마크, △연대, △현수막 및 외부 현수막(필요시), △역할자 명패, △녹음(USB 준비), △행사 안내문, △참석자 등록대 및 서명지, △음료대, △카메라, △각종 인사문 및 사회자 진행 시나리오, △메모지, 펜 등

○ 행사 종료 후 다과회(간담회)가 있을 경우

- 가급적 행사장 내 식당이나 인접한 곳으로 선정(가능하면 도보 이동이 가능한 근거리)
- 식수인원 사전 개런티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시행

3. 강사 섭외 및 예우

○ 강사 섭외시 정치색 · 이념색이 지나치게 짙은 인물은 지양

- △미래지향적 관점, △균형적 · 객관적 시각, △전문성, △지명도와 중량감, △전달 능력 등을 고려

  ※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전 주의 필요

○ 강사료,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문제는 문서화가 바람직

- 구두 합의시 분란 발생 소지

  ※ 북한이탈주민 초청시 여비, 강연료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

○ 공항 영접시 강사에게는 별도 차량을 제공하는 등 최대 예우

- 아울러 추진단의 짐 수량과 부피를 파악 후, 이동 지원

○ 강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사로부터 강연요지 사전 접수(행사 1주일전)

- 참석자에게 e-mail 사전발송 또는 현장에서 복사 배포

○ 강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강연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

- 행사 30분전에는 강연장 도착, 10분전 청중 착석 등

4. 행사 운영

○ 참석자 확보 및 참석확인 철저

-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참석률 제고
- 행사일 최소 3일전 참석인원 최종 점검(단체별 · 직능별 연락책임자 활용)

○ 중요행사시, 반드시 사전 리허설 실시

- 특히 동영상, PPT 장비 작동여부 확인

  ※ 외부파일의 경우 간혹 특정 PC에서 읽히지 않는 경우 발생

○ 행사 순서는 참석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PPT 화면으로 안내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우리의 소원' 등을 영상, 음향, 자막을 포함한 PPT파일로 제작

  ※ 사무처에서 기 제작한 것을 행사내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

○ 일본, 러시아 등 모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통역 활용

- 집중도를 높이고, 시간절약을 위해 가급적 동시통역 사용
- 여건상 통역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강의요지를 현지어로 번역하여 제공

  ※ 발표자는 현지어로 된 PPT 제작 · 활용

○ 저녁행사시 식전 · 식후행사 여부를 명확히 하여 안내

- 행사 소요시간을 정확히 예측하여 식전, 식후행사 여부 결정

○ 행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진행

- 식사 ⇨ 본행사의 경우: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본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 본행사 ⇨ 식사의 경우: 본행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가급적 예정 종료시간 준수

○ 본행사 이후 만찬이 이어질 경우, 식사 서빙 가능시간을 정확하게 파악

- 본행사 시간을 여유있게 확보, 부득이 행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

○ 참석자 및 참석위원들에게 최선의 의전과 예우를 제공할 방법 모색

5. 유관기관 협조 및 행사 홍보

○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공관측과 사전 · 사후 긴밀 협조

- 공관장 초청 및 인사말씀 실시 등

○ 보도 지원

- 무선인터넷(Wi-Fi)이 안 될 경우, 별도 유선인터넷선 지원
- 단, 기자가 스마트폰 테더링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인터넷선 준비 불필요

○ 동포언론뿐 아니라 현지언론 적극 초청

- 행사 취재(지면보도, 로컬TV 생중계 · 녹화방송 등)
- 수석부의장, 사무처장 순방시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병행 추진

○ 사무처 격월간지 '통일시대' 및 홈페이지 '해외지역회의 · 협의회 활동현황 코너'를 활용한 홍보

- 행사 분위기, 성과 등을 사진을 곁들여 게재

❖ 행사장 배치도(예시)

스크린
태극기
평통기
강연대
사회자석
〈주요내빈석〉
강사
〈주요내빈석〉
컴퓨터
스태프
(※여분 의자 비치)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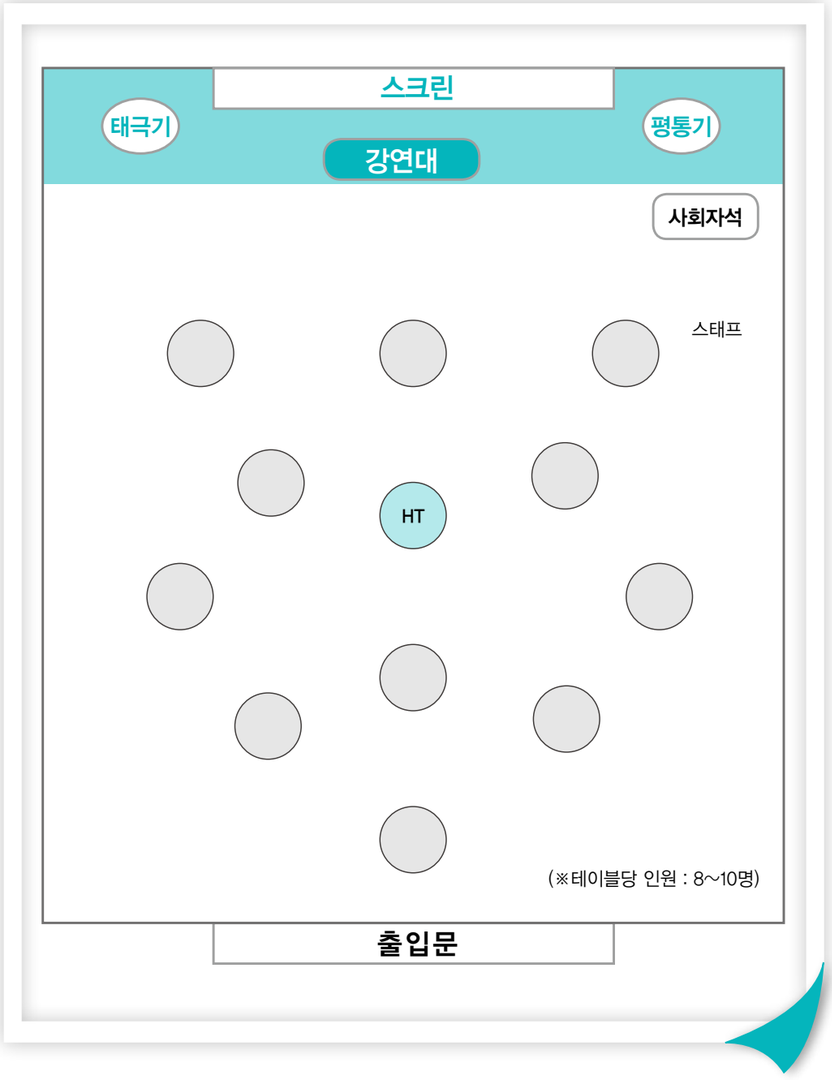
스크린
태극기
평통기
강연대
사회자석
스태프
HT
(※테이블당 인원 : 8~10명)
출입문

❖현수막(예시)

○ 메인배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지역협의회 통일강연회
○○○○년 ○○월 ○○일 ○○○ 회의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초청 통일강연회
○○○○년 ○○월 ○○일 ○○○ 회의실

○ 측면배너 문구

- 8천만이 행복한 통일! 민주평통이 준비합니다!
- 함께하자 통일준비, 앞당기자 통일대박
- 통일준비! 바로 지금부터!
- 하나된 통일생각, 행복한 통일시대
- 국민과 함께! 통일로, 통일과 함께! 미래로
- 평화의 울림, 통일의 두드림
- Together 통일희망, Tomorrow 평화통일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평통, 통일시대를 여는 희망에너지
- 통일로! 미래로! 세계로!

❖ 통일강연회 진행순서(예시)

소요시간	프로그램
15분	○개 회
(3~5분)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시민권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 *필요시 애국가는 4절까지 제창
(1~2분)	– 주요 내빈 소개
(3~5분)	– 개회사(협의회장)
(3~5분)	– 축사(공관장)
(3~5분)	– 축사(한인 단체장 등)
50분	○강연 – 강사 : 수석부의장, 사무처장, 통일전문가 등
10분	○질의 응답 ○합창 : 통일의 노래(우리의 소원) ○기념촬영
60분	○만찬(다과회)

❖ 통일강연회 사회자 시나리오(예시)

장내정돈(3분전)

○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회 사회를 맡은 ○○○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 잠시 후 ○○○ 초청 강연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위원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밖에 계신 위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잠시, 오늘의 강연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작 · 종료시간, 프로그램 안내 –

○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오늘 강연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지하신 핸드폰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회식(정각)

○ 지금부터 「○○○ 초청 ○○○협의회 통일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기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악 연주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필요시 4절까지 제창

〈 주악 연주 〉

"애국가 제창"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주악 연주〉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 ○○○ 님 참석하셨습니다.

○ 다음은 ○○○ 협의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 개 회 사 〉

○ ○○○ 회장님 감사합니다.

○ 이어서 ○○○ 대사님(또는 총영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 축 사 〉

○ ○○○ 대사님(총영사님) 감사합니다.

○ 다음은, ○○○ 단체장 ○○○ 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 축 사 〉

○ ○○○ 님 감사합니다.

강 연

○ 그럼 지금부터는 ○○○ 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 오늘의 강사이신 ○○○ 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 약력 소개 〉

○ ○○○ 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연 〉

○ ○○○ 님 감사합니다.

○ 귀한 강연에 이어, 참석위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고, 소속 및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응답 〉

○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추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후의 만찬(다과회) 시간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강을 해주신 ○○○ 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강연회 마지막 순서로"통일의 노래"를 합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손을 맞잡고 큰 소리로 통일을 염원하며 "우리의 소원"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의 노래 합창 〉

○ 감사합니다.

○ 만찬(다과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념 촬영 〉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협의회 통일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 전원 박수 〉

○ 곧이어 만찬(다과회)을 시작하겠습니다.

＊＊＊ (상황에 따라) 만찬사 또는 건배사 ＊＊＊

○ 주위 분들과 오늘 강연회에 대한 내용이나 통일에 대한 좋은 말씀들 나누시면서 만찬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찬 (다과) 〉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협의회 통일강연회와 축하 만찬(다과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04 자문위원 애경사 지원

○ 지원근거 :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 지원내용

구 분	대 상		지원액	지원형태
사망	본인	모든위원	15만원	조 화(의장) 조 전(수석, 처장)
	배우자	간부위원	15만원	조 화(의장) 조 전(수석, 처장)
		일반위원	10만원	조 화(수석) 조 전(처장)
	부모 (배우자 부모)	간부위원	15만원	조 화(의장) 조 전(수석, 처장)
결혼	본인	간부위원	15만원	화 환(의장) 축 전(수석, 처장)
		일반위원	10만원	화 환(수석) 축 전(처장)
	자녀	간부위원	15만원	화 환(의장) 축 전(수석, 처장)
회갑·칠순	본인	모든 위원	–	축 전(수석, 처장)

※ 간부위원 : 부의장, 운영 · 상임위원, 협의회장

○ 지원요청 : 해외지역과 담당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등을 통해 연락

– 경사(慶事)의 경우 최소 1주일전 여유를 두고 신청

05 민주평통 홈페이지 활동실적 게재

1. 게재 방법

1 홈페이지(www.nuac.go.kr) 로그인 (협의회별 회원계정 부여)

↓

2 해외 지역회의 · 협의회 – 행사안내/활동현황 선택

↓

3 필수사항 입력
소속 지역회의 · 협의회, 행사명, 개최일시, 장소, 참여인원 등

↓

4 내용 입력
행사결과 내용, 사진, 보도자료 동영상 링크 등

↓

5 저장 완료

2. 게재 화면

1. 홈페이지(www.nuac.go.kr) 로그인

2. 로그인 화면

3.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메뉴로 이동

4. 활동실적 글쓰기

5. 사진파일 올리기

6. 사진파일 게재 화면

7. 사진파일 올리기

8. 저장 완료

3. 게재 결과(예시)

■ 행사 안내(행사예고)

해외지역회의·협의회 / 해외 행사안내

지역회의/협의회	베이징
행사일시	2015-05-30 일 14 시 00 분 ~ 2015-05-30 일 17 시 00 분
장소	천진한국국제학교 강당
제목	평화통일기원 통일골든벨 개최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에서는 해외거주 청소년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함양하고 통일의식을 제고시키며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통일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 청소년들도 통일활동에 앞장설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화통일기원 통일골든벨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 래-

일시: 2015년 5월 30일(토) 14:00 ~17:00
장소: 천진한국국제학교 강당
참석자: 북경 및 천진 한국국제학교 외 기타 고등학교 학생등 500 여명.

목록 ▶ 해외 협의회 로그인
※ 등록 권한이 있는 사용자 만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댓글등록 본인인증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 활동 현황(행사결과)

지역회의/협의회	베이징
행사일시	2015-05-30 일 14 시 00 분 ~ 2015-05-30 일 17 시 00 분
장소	천진한국국제학교 실내 체육관
제목	2015 민주평통 청소년 통일골든벨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국지역회의(부의장 이훈복)가 주최하고 베이징협의회(회장 김기범)가 주관한 "2015 민주평통 청소년 통일골든벨"행사가 지난 5월 30일(토) 천진학국국제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훈복 민주평통 중국부의장, 김기범 베이징협의회장, 한종욱 통일관, 베이징-천진 한국국제학교 교장선생님, 신용택 천진한국국제학교 재단이사장, 이무근 천진한국인(상)회장, 김우종 재중천진대한체육회장, 베이징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학생,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훈복 민주평통 중국부의장님은 인사말에서 다음세대 통일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력으로 하루빨리 자주적인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소 인기를 염원하

06 민주평통 자문위원 온라인 지식서비스 평화통일窓(창) 사용안내

1. 개 요

분 류	내 용
운 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이트 內, 평화통일窓 통합운영
콘 텐 츠	북한실상, 한반도정세 등 통일관련 각종 정보 민주평통 분기별 정책건의 보고서 등 연간 36편
이 용	전국민 이용가능(로그인, 회원가입 없음)
서비스 방식	PC + 모바일

※ 영문 및 일문 자막 서비스 실시 (기타 다국어서비스 강화 계획)

2. 이용방법

○ www.nuac.go.kr 웹사이트에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 평화통일窓(창) 선택
원하는 콘텐츠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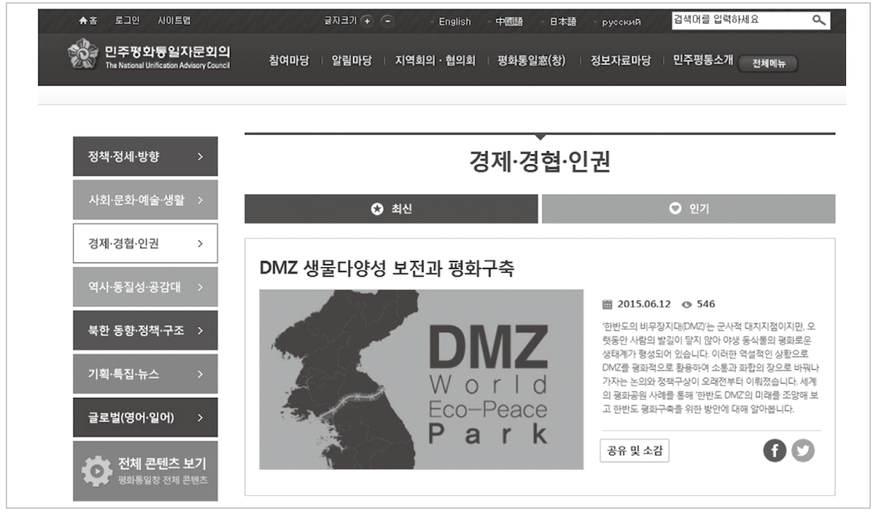

07 민주평통 웹진「e-행복한통일」· 민주평통 facebook

1. 민주평통 웹진 'e-행복한통일' (http://webzine.nuac.go.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민주평통 웹진"을 검색

※ 스마트폰은 〈Play 스토어〉에서 〈민주평통 웹진 e-행복한통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볼 수 있음.(애플 앱스토어에는 아직 미등록)

2. 민주평통 facebook (http://www.facebook.com/TheNUAC)

○ 민주평통 각종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

○ www.facebook.com에 가입한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찾아서 〈좋아요〉를 눌러주면 완료

08 『통일시대』(민주평통 기관지) 홍보

○ 기관지 『통일시대』가 월간으로 발행 · 배포

- 담당부서 : 대변인실(02-2250-2265)

○ 게재를 희망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변인실(또는 해외지역과 담당자)과 협의

- 발간 3주 전 '편집회의'가 열리는 점 고려

○ 6하원칙에 의한 행사소개와 화질이 좋은 사진(인쇄용) 3~5매 송부

※ 웹진 'e-행복한 통일(매월)'도 적극 활용

참고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013.5.22, 법률 제11815호(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 · 직능단체 · 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장 기 관

제6조(의장 · 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위 원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구 · 시 · 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제11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정부투자기업체 ·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7조 삭제 〈2001.7.24〉

제4장 위원회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회 의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 · 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개회 · 폐회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제28조(방청 등)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이북 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 · 군 · 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 · 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통일촉진기금

제30조(통일촉진기금)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 ·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삭제 〈2001.7.24〉

– 이하 부칙 생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 2015. 1. 20, 대통령령 제260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2조(등록)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위원 신상카드 1장
2. 반명함판(3.5㎝×4.5㎝) 사진 3장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미리 등록할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2013.8.13〉
1.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5조(수당과 여비 등) ①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 간사 및 운영위원회의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2장 질서와 경호

제6조(모욕 등의 금지) 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생활 등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회의장 출입 제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조 삭제 〈2002.1.26〉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①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장 상임위원회

제10조(구성의 공고 등)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1조(집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집회의 일시 · 장소를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 · 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

하여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4조(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5조(회의록) 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그 밖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7조(집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2.2.29]

제18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20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의 사 〈개정 2012.2.29〉

제21조(발언허가 신청) 법 제25조에 따른 위원의 발언허가 신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작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22조 삭제 〈2002.1.26〉

제6장 방 청 〈개정 2012.2.29〉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24조(녹음 등의 허가) 회의장에서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을 허가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장 지역회의등 〈개정 1990.9.1〉

제25조(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이

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13.8.13〉
② 위원의 출신 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 월남자(越南者)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 재외동포인 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25조의2(기능 등)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 · 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26조(집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각 지역회의별 집회 일시 · 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27조(의사) 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표결방법) ① 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되, 표결 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 지역회의를 주재한 위원은 그 지역회의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수석부의장에게 그 표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29조(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수석부의장은 각 지역회의로부터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의안의 가부(可否)를 선포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0조(지역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 · 군 · 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支會)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회의 조직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 ·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30조의3(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본조신설 2012.2.29]

제31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장 보칙 〈신설 2015.1.20〉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법 제4조의 단서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위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1.20.]

– 이하 부칙 생략 –

〈별 표〉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지급기준
회의 출석 수당			매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
여 비	국내 거주 자문위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국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에 따른 그 밖의 사람의 국외 항공운임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에 따른 사람의 국외 여비를 합한 금액
	국외 거주 자문위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의 일비 · 숙박비 · 식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에 따른 그 밖의 사람의 국외 항공운임을 합한 금액
		국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실비(實費)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정 2013. 6. 4. 규정 제1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외지역회의는 대륙별 · 국가별 협의회 설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 해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해외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통일정책 자문 · 건의를 위한 연구 및 조사
3. 재외동포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수렴
4. 청년 · 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
5.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활동
6.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활동
7. 기타 지역회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부의장) ① 부의장은 당해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역 출신의 운영위원, 협의회장, 상임위원 중에서 수석부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의장의 추천으로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부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지역운영위원회) ①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부의장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지역회의 간사, 해당 지역회의 소속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지역의 운영위원, 상임위원, 지회장 중에서 추가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⑤ 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 · 조정 · 통합
2.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
4.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지역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역분과위원회) ① 지역회의에는 각 지역회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자문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해당 지역협의회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장 재정 등

제8조(재정) ① 사무처장은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비 지급규정" 등에 따라 사무처 지원금에 대한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상황 보고) 부의장은 지역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을 거쳐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하 부칙 생략 –

〈별표 1〉 **해외지역회의**(제2조 관련)

지역회의	소속협의회
일 본	일본동부, 일본중부, 일본근기, 일본서부
중 국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선양
아세안	서남아, 동남아남부, 동남아북부,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중앙아시아
미 주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 샌디에고, 휴스턴, 달라스, 애틀랜타, 마이애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덴버,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밴쿠버, 브라질, 중미 · 카리브, 남미서부
유 럽	영국, 남유럽, 북유럽, 중동, 아프리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2013. 6. 4, 규정 제16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25〉

제2조(설치) 협의회는 재외동포의 수, 자문위원 활동거점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3. 6. 4〉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및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사업
3.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4.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사업
5. 재외동포 화합과 거주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 6. 4]

제2장 기 관

제4조(회장) 협의회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6. 4 〉

제5조(협의회임원) ① 협의회에는 회장 외에 부회장 · 간사 · 지회장 및 분과위원장 등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부회장 · 분과위원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인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회장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수석부회장 1인을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6. 4 〉
⑤ 간사는 회장이 천거하여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하되,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5. 6.13]

제6조(지회) ① 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별 · 지역별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장은 당해지역 자문위원 가운데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한다.
③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활동방향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지회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지회에는 지회장이 임명하는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총무는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 사무를 처리하고,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 6.13]

제7조(회장 등의 임기) 회장 · 부회장 · 간사 · 지회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 부회장 · 간사 · 지회장 및 분과위원장 등 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 7.25〉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분과위원회
2. 정치외교분과위원회
3. 여성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 · 직책 · 거주지역 등을 감안하여 회장과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3. 7. 25]

제3장 회 의

제9조(소집)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처 또는 주재공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 6.13〉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회장 · 분과위원장은 개회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의안을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역실정에 따라 지회별 · 국가별 또는 인근 지역별 회의가 필요할 때에는 지회장 또는 각 협의회의 회장이 협의하여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7. 25]

제10조(의사) 협의회 · 지회 ·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7.25〉

제4장 운영실적 등 통보

제11조(활동상황 통보) ① 회장은 협의회 또는 자문위원의 활동상황 및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 건의사항을 수시로 사무처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② 자문위원의 신상변동사항 또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인 또는 회장이 주재공관을 경유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제12조(사무실) 협의회 연락사무실은 지역실정에 따라 공관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제13조 ① 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급규정" 등에 따라 사무처 지원금에 대한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2005. 6.13 2013. 6. 4〉

제5장 보 칙

제14조 삭제 〈2007. 6.21〉

– 이하 부칙 생략 –

〈별표〉

해외지역협의회 (제2조 관련)

1. 일본동부협의회
2. 일본중부협의회
3. 일본근기협의회
4. 일본서부협의회
5. 베이징협의회
6. 광저우협의회
7. 칭다오협의회
8. 상하이협의회
9. 선양협의회
10. 서남아협의회
11. 동남아남부협의회
12. 동남아북부협의회
13. 베트남협의회
14. 호주협의회
15. 뉴질랜드협의회
16. 워싱턴협의회
17. 뉴욕협의회
18. 필라델피아협의회
19. 보스턴협의회
20. 로스앤젤레스협의회
21. 오렌지 · 샌디에고협의회
22. 휴스턴협의회
23. 달라스협의회
24. 애틀랜타협의회
25. 마이애미협의회
26. 하와이협의회
27. 샌프란시스코협의회
28. 덴버협의회
29. 시애틀협의회
30. 시카고협의회
31. 토론토협의회
32. 밴쿠버협의회
33. 브라질협의회
34. 중미 · 카리브협의회
35. 남미서부협의회
36. 영국협의회
37. 남유럽협의회
38. 북유럽협의회
39. 중동협의회
40. 아프리카협의회
41. 모스크바협의회
42. 블라디보스톡협의회
43. 중앙아시아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4. 8. 6. 사무처 훈령 제186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일) 이 훈령에서 "운영비"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적 · 물적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 운영비의 지원 · 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용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원활동지원국장(이하 "위원활동지원국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운영비 집행지침을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출) ① 사무처장은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운영비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해당 지역회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해외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본인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해당 지역회의의 간사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운영비 관리 계좌 명의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부의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변동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 ①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월별 운영비 운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고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국내 부의장"이라 한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 지역협의 회 회장(이하 "국내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해외 부의장과 해외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당해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회계장부인 경우에는 위원활동지원국장이 당해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반납)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법령 및 운영비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혼합기재의 금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잔액증명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잔액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훈령 제83호)의 제6조제1항(은행잔액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이자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반납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훈령 제83호)의 제7조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회 계 장 부

담당	간사	부의장/회장

단위 : 원

일 시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전월이월				
	0월 누계			

*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 별도 첨부

- 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개정, 2014. 4. 1. 사무처훈령 제1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활동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회의 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2. "사업비 관리부서"란 지역회의 등의 사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과 결과를 확인 · 관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 범위) 사업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1. 포럼, 토론회 등 통일에 관한 논의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업
2. 강연회, 현장 방문 등 통일 ·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
3. 통일문화사업 등 지역별 · 직능별 · 대상별 통일공감 확산을 위한 사업
4. 연수 등 자문위원의 통일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지역회의 등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 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장(이하 "부의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신청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다만, 부의장 등이 요청하여 긴급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①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비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 수행 능력 유무
5. 그 밖에 사업의 특성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금액은 사업비 신청 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사업비 신청 부의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활동지원국장이 되고, 간사는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그 외의 사무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요청하고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지역 자문위원 등의 의견(서면자료를 포함한다)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는 사업추진 전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는 사업비를 신청한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 소속 지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계좌로 전자 이체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시 이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고려하고, 부의장 등은 사업비가 대행기관 지원금 및 기타경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추진) ① 부의장 등은 사업비 지원 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처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부의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추진 결과 제출) ① 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총 사업비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와 해당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비 관리 부서는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사업 추진 결과가 사업비 지원 결정의 내용과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부의장 등은 사업비 집행금액이 확정되면 사업비 집행 잔액(사업비 지원 금액과 집행 금액과의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집행 잔액의 반납과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를 위하여 사무처장은 고지서(해당 계좌, 기한 등을 포함한다)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체크카드 사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유지 등) ① 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자 이체할 수 있다.
② 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부의장 등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자료의 종류 및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계산서 및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 5년
2. 단순 · 일상적인 사업 수행 자료 : 1년

제14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 신청서

① 사 업 명	(※ 예산사업 : 세부사업 - 세사업)			
② 신 청 인	소 속			
	성 명			
	주소 및 연락처			
③ 사업 기간				
④ 사업 목적				
⑤ 사업 내용				
⑥ 사 업 비 (단위 : 천원)	총 소요액	사업비 신청액	자체 부담	
			대행기관 지원액	기타 금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규정」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통일활동 사업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일활동 사업 계획서

Ⅰ. 사 업 명

Ⅱ. 사업 목적

Ⅲ. 사업 기간

Ⅳ. 사업 추진 방침

Ⅴ. 사업 세부 계획

1. 사업 개요(일시, 장소, 대상 등)
2. 추진 일정
3. 주요 내용(프로그램, 행사당일 시간계획, 추진방식 등)
4. 사업 효과

Ⅵ.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항 목	재 원 (지원액/자체 부담)	금 액	산출 내역 (단가×수량)	비 고
< 합계 >				

[별지 제3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

「○○○」사업 추진을 위한 통일활동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결정 하오니 결정 내용과 붙임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 사업 기간 : ~
○ 사업 일시 · 장소 :
○ 사업 대상 :
○ 사업 내용 :

□ 사업비 지원 결정 내역

○ 지원 결정액 <단위 : 천원>

예산 사업 (세부사업-세사업)	통일활동 사업명	신청액	지원 결정액

○ 지원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사업비 지원 결정 내역			자체 부담	비 고 (조정 사유 등)
	지원 신청액 (A)	지원 결정액 (B)	조정액 (B-A)		
< 합계 >					

○ 지원 조건 : [붙임] 참조

[붙임]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조건

1. 통일활동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함)는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 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3. 사업비 지원 신청서 상의 자체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사업비 지원액을 동률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사업비 관리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비는 환수됩니다.
   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사업비 지원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라. 해당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등

6. 사업 완료 또는 중단 시에는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총 사업비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 추진 결과(양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한 차례(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사업 완료 후에는 지원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비로 발생한 이자는 운영비 이자와 함께 연말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당해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단순 · 일상적인 사업 수행자료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1. 안 건	
2. 주요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규정」 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 첨부서류 : 통일활동 사업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심의 요청인 (직위, 이름) (서 명)

[별지 제5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심의 결과 (가 / 부)	사업비 지원 내역		
	신청액 (천원)	지원액 (천원)	지원 조건

년 월 일 위원장 (직 위, 이 름) (서명)

위 원	심의 의견		서 명
	가	부	

[별지 제6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

① 사 업 명	(※ 예산사업 : 세부사업 – 세사업)					
② 신 청 인	소 속					
	성 명					
	주소 및 연락처					
③ 사업 기간						
④ 사업 목적						
⑤ 사업 내용						
⑥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총 집행액 (B+C)	통일활동 사업비			자체 부담	
		지원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 예정액	집행액 (C)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규정」 제11조에 따라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결과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통일활동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1부

년 월 일

(부의장, 협의회장) (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통일활동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 일시 · 장소 :
○ 참 석 :

Ⅱ. 추진 내용

○ 주요 추진 업무(사업 기간 중 추진업무, 프로그램 등)
○ 관련 사진 (사업 규모, 프로그램 등의 확인을 위해 2매 이상 첨부) 등

Ⅲ. 의견수렴 내용 및 건의사항

Ⅳ. 성과 및 개선사항

○ 사업 추진 효과 :
○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

Ⅴ. 예산집행 결과

○ 예산집행 총괄 (단위 : 원)

총 집행액 (B+C)	통일활동 사업비			자체 부담		비 고
	지원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 예정액	집행액 (C)	

* 예산사업 : 세부사업 – 세사업

○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집행 항목	지원액	집행액	집행 내역 (단가×수량)
< 합계 >			
①			
②			

* 영수증 등 증빙서류 : 붙임 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00. 2. 16. 규정 제1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열) 자문위원의 의전상 서열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1. 수석부의장
2. 부의장(행정구역 건재순 및 이북5도, 여성계순)
3.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4. 지역협의회장
5. 상임위원
6. 자문위원

제3조(초청대상 구분) 국가기관 주최 각종행사시 초청대상 구분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중앙단위 행사 :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2. 시도단위 행사 : 관내부의장,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3. 시 · 군 · 구단위 행사 : 관내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전원 (필요시)

제4조(편의제공 및 협조사항) 자문위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는 각급 기관과 협조한다.
1. 자문위원 자격으로 공식 해외여행시 관용여권을 발급
2. 국립묘지 단체참배시 의전상 A급을 적용
3. 통일정책과 국가안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통일자문회의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
4.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발간되는 통일관계 자료는 자문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제5조(경비지원) 협의회 및 자문위원이 통일문제에 관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권형태의 배제) 자문위원의 개별적인 청탁, 이권 및 비리개입 등의 일체의 특권형태는 배제한다.

제7조(청원의 처리) 사무처는 자문위원의 각종 청원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2. 21일부터 시행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개정 2009. 5. 6, 규정 제1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깃발, 배지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볼마크(별표1)
2. 국문, 영문, 한문 로고타입(별표2)
3. 통일자문회의 정기 및 약기 (별표3)
4. 자문위원 배지(별표4)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통일자문회의 시각표시물 표준화 지침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사무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적인 영리나 기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타)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일자문회의 시각표시물 표준화지침서」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 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로 형태나 색상 등의 변형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형태의 의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하는 시각 상징물로 무궁화, 비둘기, 태극을 기본 모티브로 활용한 디자인이다.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함께한 무궁화는 강건함과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태극을 품은 비둘기는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무한의지의 표현이다.

색상의 의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시각 상징물의 주된 색상은 '금색(PANTONE 874C)'과 '남색(PANTONE 2757)'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금색'은 순수함과 고귀함을 의미하며 '남색'은 희망과 생명을 의미한다. 두색의 조합은 '민주평화통일'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희망 그리고 고귀한 의지를 상징한다.

심벌 기본형

2색 조합형 심벌
– 금색(PANTONE 874C), 남색(PANTONE 2757)

단색형 심벌
– 금색(PANTONE 874C)

그리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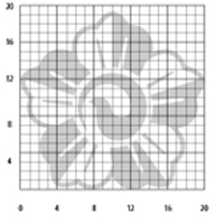

최소 사용 규정

PATONE 874C(Gold) PATONE 2767C

〈별표 2〉

국문 로고타입

국문 로고타입은 심볼과 더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심볼과의 통일성과 조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므로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로고타입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단, 대형크기나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항에 예시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가로형 국문 로고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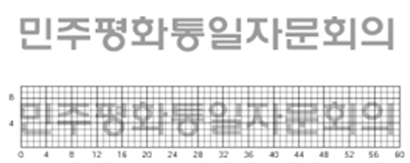

세로형 국문 로고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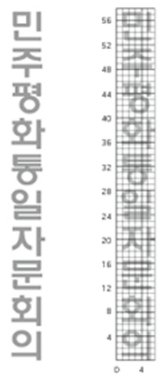

PATONE 874C(Gold)

영문 로고타입

영문 로고타입은 심볼과 더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심볼과의 통일성과 조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므로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로고타입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단, 대형크기나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항에 예시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가로형 영문 로고타입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세로형 영문 로고타입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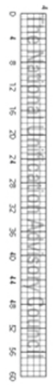

한문 로고타입

한문 로고타입은 심볼과 더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심볼과의 통일성과 조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므로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로고타입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단, 대형크기나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항에 예시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가로형 한문 로고타입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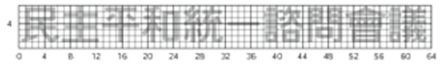

세로형 한문 로고타입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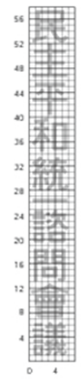

〈별표 3〉

정기/약기

정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시각 제작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시각적인 주목성이 높은 매체이므로 높은 품격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제작되어야 한다.

제작사양 : 정기는 고급 벨벳원단에 양질의 자수처리를 하여 정밀하게 제작하고 약기는 상황에 따라 벨벳에 자수처리하거나 합성소재에 본염처리하여 사용한다.

정기

약기

〈별표 4〉

배지

배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임을 증명하고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작사양 : 금도금 신주 프레임 가공 후 지정색으로 상감 처리하여 지정된(14mm) 크기로 제작한다.

재현 이미지

제작 사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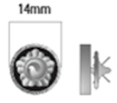

제17기 해외 지역회의 · 협의회

운영매뉴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
2015년 6월
서울 중구 장충단로 84
02) 2250-2246 ~8